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대학을 지방대학에 포함〉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358호)

2024. 11.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용태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29.
3. 회부연월일 : 2024. 8.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지방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수도권에 아닌 지역에 소재한 학교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기북부 지역에 위치한 상당수의 대학은 접경지역에 위치해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구 또한 감소하여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등 지방에 있는 대학보다 더욱 열악한 교육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속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대학을 지방대학의 범위에 포함시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역차별 받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대학을 지방대학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2조(정의)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 나. 「접경지역 지원 특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 감소지역

현행	개정안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접경지역¹⁾ 및 인구감소지역²⁾은 그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낙후되거나, 소외되는 지역으로 균형발전 측면에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음. 그러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각각 그 지역에 대한 지원규정이 있을뿐, 그 지역 내 대학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지방대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대학 학생 및 지역인재에 대한 해외교류·연수의 기회균등,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공공기관 채용 확대 등의 지원을 규정³⁾하고 있는바,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 내 접경지역

- 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간인통제선”이라 한다)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해외교류·연수의 기회균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해외교류·연수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대학 학생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학생의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해외교류 및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① 국가는 신규 임용하는 국가공무원 중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임용하는 지방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경우 그 적용대상 시험, 선발비율, 선발방법 등

및 인구감소지역 소재 대학이 지방대학에 포함될 경우 이와 같은 구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지자체 주도의 대학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는 그 지역 소재 대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 이를 고려했을 때, 수도권이긴 하지만,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는 지역 소재 대학을 지방대학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개정안에 따라 지방대학이 되는 대학은 다음과 같음.

은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그 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2항제3호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그 채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는 경우
2.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특별 채용제도를 개발·시행하는 경우
3.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및 인턴채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 수도권 소재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내 대학 현황⁴⁾⁵⁾ >

지역	학제	학교명	시군구	입학정원
접경지역	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경기 고양시	841
접경지역	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경기 김포시	120
접경지역	대학교	신한대학교	경기 동두천시	120
접경지역	대학교	대진대학교	경기 포천시	1703
접경지역	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의대)	경기 포천시	504
접경지역	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 강화군	12
접경지역	전문대학	농협대학교	경기 고양시	69
접경지역	전문대학	김포대학교	경기 김포시	964
접경지역	전문대학	서정대학교	경기 양주시	1626
접경지역	전문대학	웅지세무대학교	경기 파주시	599
인구감소지역	대학원대학	선학유피대학원대학교	경기 가평군	38
접경지역	대학원대학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경기 고양시	106
접경지역	대학원대학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경기 고양시	48
접경지역	대학원대학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경기 고양시	30
접경지역	대학원대학	제네바신학대학원대학교	경기 파주시	30

교육부는 수도권 일부지역은 비수도권과 같이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대학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대학을 지방대학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지방대 재정지원 및 지방대 졸업생에 대한 혜택 등 한정된 자원(공공기관 의무채용 등)을 잠식할 우려가 있고, 부수적으로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 소재 의과대학으로 인해 경기도 지역인재전형 등 사회적 논란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는바, 이에 지방대학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법의 취지

4) 본교가 아닌 이원화캠퍼스(위치변경인가) 제외

5) 총 15개교, 6,810명(전체 2%)의 입학정원(24학년도 대학 모집인원 344,296명(수도권 132,307명, 비수도권 211,989명))

와 맞지 않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8